

의안검토보고

의안 번호	제 222 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01. 10. 6.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 재 근		

1.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수수료 종목을 정비하고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수수료감면대상자명칭 및 근거법령개정(안 제6조제1항제2호)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개정(안 별표)

2.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등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련 사무의 수수료를 삭제 또는 신설하고, 일부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수수료감면조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 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한 수수료의 인상 및 명칭변경으로 인감증명등 25건이며,
- 사무의 폐지등으로 인한 수수료의 삭제대상은 제적기재 사실증명등 19건이며,
-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신설한 수수료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등 13건임.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130조제1항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 등 조례안을 검토한바,

· 삭제대상으로

-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사무(제적기재사실증명 - 호적법상 제적등본으로 갈음, 물품납품실적 증명 - 물품공사용역, 실적 증명으로 갈음등)
- 조례의 상위법령인 개별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규정한 사무 (토지형질변경허가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공연장설치허가증재교부 - 공연법시행규칙)
- 법령에 수수료규정이 없는 사무(출판인쇄소 등록신청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사도개설허가 - 사도법)
- 법령의 폐지로 사무근거가 없는 사무(사설시장개설 및 경신신청 - 도소매 진흥법폐지)
- 서울시 소관업무(원자재증명, 시영주택양도양수 승인신청등) 등이며,

· 신설대상으로

- 법령에 자치구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된 사무

(부동산중개업등록신청 - 부동산중개업법,
석유판매업등록신청 - 석유사업법)

(복합유통제공업, 일반게임장등록,
노래연습장등록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 개별법령에 수수료규정이 없으나 수수료징수대상으로 신청사무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 - 건설기계저당법) 등이며,

· 기타 사항

- 명칭을 변경하거나 수수료액을 인상하는 내용(거주사실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등)으로서,
- 동 조례안은 2001. 6. 22부터 2001. 7. 11까지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입법 예고 결과 자치행정과 및 재무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관련수수료등 추가 개정대상에 대하여 8. 28~9. 17까지 입법예고 하였음.
-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해 수행한 사무에 대한 비용으로서 원가이하로 제공되어온 불합리한 금액을 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불필요한 사무 등을 폐지하며, 법령에 의거 신설된 사무는 수수료를 신설하는등 관련 수수료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0조
- 공연법 제39조
-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 부동산증개업법 제37조의3
- 석유사업법 제31조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46조 제2항

□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 주요자료 내용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第128條 (手數料) ①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③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연법

제39조 (수수료) 시장·군수·구청장과 위원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및 정기검사·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및 정기검사·안전진단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공연장업등록신청서 등) ④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연장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第37條의3(手數料)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介事務所登錄證의 재교부를 申請하는 者
 3.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仲介士資格證의 재교부를 申請하는 者
 4.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事務所設置의 申告를 하는 者 (全文改正 2000·1·28)
- 〔施行日 2000·7·29〕

석유사업법

第31條(手數料)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販賣業의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2.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製品의 品質検査를 받고자 하는 者 第31條(手數料)
 - ①第9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販賣業(副產物인 石油製品販賣業을 제외한다)의 登錄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해당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製品의 品質検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品質検査機關에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금액, 徵收方法, 使用用途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產業資源部令 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2000·1·28〕

〔施行日 2000·7·2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반"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4. "음반등 제작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음반등 배급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음반등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음반등 판매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비디오물 대여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 나. 비디오물 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청소년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 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10.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복합유통·제공업"이라 함은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 가운데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일 2001·9·25])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9·25])

제28조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① 신고대상 영업만을 포함하거나 신고대상 영업과 신고·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9·25])

제3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9·25])

제46조 (수수료)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

③ 생략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 자료 내용

연 번	현행수수료 종목 및 요액			개정안	
	종 목	단위	수수료 (단위:원)	개 요	내 용
1	재적기재사실증명	1건	350원	삭 제	호적법시행규칙 제27조에의거 제적등본으로 갈음
2	거주에관한증명 부양사실증명	1건 1건	350원 350원	명칭변경	⇒거주사실확인서(500원) ⇒부양가족사실확인서(500원) 행정자치부예규 제56호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3	물품납품실적증명	1건	350원	삭 제	물품및공사용역, 실적증명으로 갈음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명	1건	350원	삭 제	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5	보상금지불증명	1건	350원	삭 제	토지수용확인서로 갈음
6	지방세(완납, 미과세, 징수유예)증명 세목별과세증명	1건 1건	350원 350원	명칭변경 	⇒지방세납세증명서(500원) 2000. 1. 1 지방세법개정(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 20, 23조, 시행규칙 제14조) ⇒세목별과세(납세)증명(500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기준표(99. 8. 2. 행자부고시)
7	공부의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정지적도등을 포함)	1건	350원	삭 제	지적법시행규칙 제43조1항(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에 근거없는민원임
8	생산실적증명 실수요자증명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1건 1건 1건	350원 350원 350원	삭 제	통상산업부고시 1995-92 의거 폐지

연 번	현행수료 종목 및 요액			개정안	
	종 목	단위	수수료 (단위:원)	개 요	내 용
9	원자재(시설재)증명	1건	350원	삭 제	서울특별시업무로 자치구 민원이 아님
10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검사증명	1건	350원	삭 제	건축법시행규칙 제8조, 제16조에 의거 건축허가증 및 사용검사증으로 갈음하여 증명교부
11	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건	350원	삭 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설치 조례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공사로 이관
12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1건	550원	삭 제	근거법령인 도시개발법제6조폐지 (99. 3. 31.)
13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1건	550원	삭 제	사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서식1에 의거 수수료징수규정 없음.
14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 행위허가	1건	2,000원	삭 제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규정에 의거 수수료 없음
15	공연장설치허가신청	1건	50,000원	명칭변경	⇒공연장업등록신청 (50,000원)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16	공연장설치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	1건	30,000원	명칭변경	⇒공연장업변경등록신청 (30,000원)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17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5,000원	삭 제	공연법시행령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지 13호서식에 의거 수수료 없음 (99. 4. 30.)
18	출판인쇄소 등록신청	1건	550원	삭 제	서울시공문 (2000. 7. 21) 구청장방침 제1539호 (2000. 7. 25) 관보 제14593호 (2000. 8. 31)에 의거 수수료 및 위임규정이 없음
19	시설시장개설및경신신청	1건	550원	삭 제	도소매 진흥법 폐지 (1997. 7. 1)
20	시영주택(택지)양도 양수, 소유권이전해지승인신청	1건	550원	삭 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18조규정에의거 도시개발공사로이관
21	시영주택(증, 개축)승인신청	1건	550원	삭 제	상 동

연 번	현행수수료 종목 및 요액				개정안	
	종 목	단위	수수료 (단위:원)	개 요	내 용	
22	신설			종목신설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20,000원) 석유사업법시행규칙제25조(수수료) 폐지로 석유사업법제31조제1항에의거 수수료금액을징수하도록규정(부칙1, 2)	
23	신설			종목신설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10,000원) - 위와 같음 -	
24	신설			종목신설	⇒부동산중개업등록신청 - 법인인증개업자(20,000원) - 공인중개사(8,000원)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법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25	신설			종목신설	⇒중개법인의분사무소설치신고(20,000원) - 위와 같음 -	
26	신설			종목신설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3,000원) - 위와 같음 -	
27	신설			종목신설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1,000원)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28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	1건	2,000원	명칭변경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신청(5,000원)	
29	음반비디오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변경신고	1건	1,000원	명칭변경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사항변경신청 (2,500원)	
30	신설			종목신설	⇒복합유통제공업의신고(5,000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제2항에 의거 수수료신설	
31	신설			종목신설	⇒복합유통제공업의등록신고(5,000원)	
32	신설			종목신설	⇒일반게임장업등록 ①신규 3,000원 ②변경 15,000원 -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관한법률 제46조제2항에 의거 수수료신설	
33	신설			종목신설	⇒노래연습장업등록 ①신규 20,000원 ②변경 5,000원 - 음반비디오및게임에관한법률 제46조제2항에 의거 수수료신설	